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민경 (성평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속적·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센터의 행정처분 기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3호	개선 명령	업무 정지 15일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12